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	기 관 의 장
람	



제 696 호 2011. 6. 22(수)

## 공 고

-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443호[울산광역시 북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 ..... 2  
○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444호[울산광역시 북구 구보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] ..... 4

회								
람								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 - 443호

「울산광역시 북구 구보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
2011년 6월 22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소식지 제호 및 발행주기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소식지 제호 변경에 따른 조문 개정(안 제2조 1항)
  - ‘행복일번지 울산 북구’ → ‘무룡산’
- 나. 발행주기를 월별로 변경함에 따른 조문 개정(안 제3조)
  - 분기 1회 → 매월 또는 분기별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:문화홍보과장)에게 전화, FAX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(전화 219-7207, FAX 219-7569)

- 가. 여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#### 4. 기타

『울산광역시 복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전문은 예고기간 동안 우리구 문화홍보과에 미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 - 444호

「울산광역시 북구 구보조례 시행규칙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 
취지를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
2011년 6월 22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소식지 발행주기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소식지 발행주기를 월별로 변경함에 따른 조문 개정(안 제2조 제1항)
  - 분기 마지막 달 25일 → 내월 말일 또는 분기 마지막달 말일
- 나. 주민들에게 구정소식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알림사항, 문화 행사 등을 신청자에 한해 문자메시지, SNS 등을 통해 공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(안 제5조 제2항)

### 3. 의견제출

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차조문화홍보과장)에게 전화, FAX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(전화 219-7207, FAX 219-7569)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#### 4. 기타

울산광역시 북구 구보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전문은 예고기간 동안 우리구 문화홍보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.